

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

제정 2010.05.01.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9호
개정 2013.07.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(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)
개정 2016.12.21.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36호
개정 2017.09.18.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5호
개정 2018.02.26.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52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한국정책방송원의 소속 직원(한국정책방송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, “성폭력”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4조(원장의 책무) 한국정책방송원장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실시
2.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
3. 소속직원에 대한 예방 및 처벌 등 홍보
4. 예방교육 참석
5. 관련예산 확보 등 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및 시행
6.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
7. 성희롱·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등

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5조(고충상담창구) ①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(이하 “고충상담·처리”라 한다)를 위하여 운영관리부에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(이하 “고충상담창구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, 인사(복무) 또는 감사 담당자, 공무원노동조합지부 임원, 필요 시 외부전문가(성희롱·성폭력, 양성평등)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,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충상담·처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고충상담, 조언 및 고충의 접수
 2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 3.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·조정 등에 관한 사항
 4. 성희롱·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 5.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업무
- ④ 운영관리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⑤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·처리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6조(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) ① 운영관리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,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
2.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 4. 성희롱·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 5.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
 6.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
- ③ 운영관리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직원은 매년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⑤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관리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고,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7조(성희롱·성폭력 관련 고충상담·처리의 신청) ①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, 소통 건의함(3층·5층), 나루 내 온라인 성비위 상담 및 신고 제보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·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·처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8조(상담 및 조사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상담·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고충상담·처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, 고충상담·처리 신청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

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- ④ 운영관리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운영관리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- ⑥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.
- ⑦ 고충상담원은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,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·처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9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한국정책방송원장(인사·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한국정책방송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성희롱·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한국정책방송원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, 직무정지,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.

③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·처리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치료 지원,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·처리 신청 사안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관련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10조(조사결과 등의 보고 등) ① 운영관리부장은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·처리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·처리 신청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11조(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고충상담·처리 신청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운영관리부장이 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,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필요시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·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 [개정 2017.09.18.] [개정 2018.02.26.]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. [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분하되,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
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13조(조사의 종결)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·처리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 [전문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14조(징계)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

②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
③ 성희롱·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제15조(재발방지조치 등)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로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위 규정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회 개최시 반기별 1회 정도의 주기로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부 칙 <제79호, 2010. 5. 1.>

이 지침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) <제101호, 2013.07.15.>
제1조(시행일) 이 기본운영규정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136호, 2016. 12. 22.>
이 지침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145호, 2017. 09. 18.>
이 지침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152호, 2018. 02. 26.>
이 지침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[개정 2016.12.21.]

|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접수 번호 | 접수 일자 | 신청인 | | 고충내용 | 처리결과 | 회신 일자 | 확인 | |
| | | 성명 | 소속부서 | | | | 고충 상담원 | 운영 관리부장 |
| | | | | | | | | |

[별지 제2호 서식] [개정 2016.12.21.] [개정 2018.02.26.]

|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·처리 신청서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-----|------|--|
| 접수일 | 20 . . . | | 담당자 | (서명) | |
| 당사자 | 신청인 | 성명 | | 소속 | |
| | | 직급 | | 성별 | |
| | 대리인 <small>*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</small> | 성명 | | 소속 | |
| | | 직급 | | 성별 | |
| | 행위자 | 성명 | | 소속 | |
| | | 직급 | | 성별 | |
| 상 담 (신 청) 내 용 | *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. | | | | |
| 요구사항 <small>* 조사를 원하는 경우</small> | 1. 성희롱·성폭력의 중지() 2. 공개사과() 3. 징계 등 인사조치() 4. 기타() | | | | |
| 처리결과 | | | | | |
| * 관련 자료 첨부 | | | | | |